

서울특별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2020. 6. 19.

교 육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524
----------	------

2020년 6월 19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5. 25.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20. 6. 10.
3. 상정일자 : 제295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0. 6. 18)
4. 의결일자 : 제295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0. 6. 19, 수정 가결)

II. 제안이유

-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사업을 반영하고, 용도가 지정된 성립 전 사용분을 계상하기 위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함.

Ⅲ.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

1. 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편성액		기정예산액 (B)	증감내역	
		금액(A)	비율		증감액(A-B)	비율
총 규 모		10,792,467	100.0	10,131,363	661,104	6.5
세 입	중앙정부이전수입	6,104,494	56.6	5,957,606	146,888	2.5
	자치단체이전수입	4,101,077	38.0	3,458,976	642,101	18.6
	기 타 이 전 수 입	26,602	0.2	9,898	16,704	168.8
	자 체 수 입	179,151	1.7	181,534	△2,383	△1.3
	지 방 교 육 채	0	0.0	0	0	-
	전 년 도 이 월 금	381,143	3.5	523,349	△142,206	△27.2
세 출	인 건 비	5,994,365	55.5	6,070,501	△76,136	△1.3
	기 관 운 영 비	29,814	0.3	29,757	57	0.2
	학 교 운 영 비	918,669	8.5	901,800	16,869	1.9
	교 육 사 업 비	2,551,095	23.6	2,110,235	440,860	20.9
	시 설 사 업 비	898,796	8.4	895,183	3,613	0.4
	지 방 교 육 채 및 BTL	385,487	3.6	109,646	275,841	251.6
	예 비 비 및 기 타	14,241	0.1	14,241	0	0.0

2.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내역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일반재원	목적지정		
								추경	우선확정	
합 계		10,792,467	100.0	10,131,363	661,104	6.5	309,390	87,979	263,735	
중앙 정부가 전수입	보 통 교 부 금	5,171,671	47.9	5,142,070	29,601	0.6	29,601	0	0	
	특 별 교 부 금	177,613	1.7	121,782	55,831	45.8	0	6,110	49,721	
	증 액 교 부 금	123,774	1.1	0	123,774	순증	2,874	120,900	0	
	국 고 보 조 금	29,632	0.3	144,440	△114,808	△79.5	0	△120,900	6,092	
	특별회계전입금	601,804	5.6	549,314	52,490	9.6	0	52,490	0	
	계	6,104,494	56.6	5,957,606	146,888	2.5	32,475	58,600	55,813	
자치 단체 이 전 수 입	법 정	시 도 세	1,633,451	15.2	1,400,083	233,368	16.7	233,368	0	0
		담 배 소 비 세	254,074	2.4	253,957	117	0.0	117	0	0
		지 방 교 육 세	1,824,083	16.9	1,644,977	179,106	10.9	179,106	0	0
		학 교 용 지 금	13,822	0.1	13,822	0	0.0	0	0	0
		지 방 교 육 재 정 금	98,492	0.9	100,065	△1,573	△1.60	△1,573	0	0
		교 육 급 여 보 조 금	8,660	0.1	8,660	0	0.0	0	0	0
		무 상 교 육 경 비 금	11,457	0.1	0	11,457	순증	5,728	5,729	0
	소계	3,844,039	35.6	3,421,564	422,475	12.3	416,746	5,729	0	
	비 법 정	광역자치단체	175,153	1.6	37,412	137,741	368.2	0	8,836	128,905
		기초자치단체	81,885	0.8	0	81,885	순증	0	7,283	74,602
		소계	257,038	2.4	37,412	219,626	587.0	0	16,119	203,507
	계	4,101,077	38.0	3,458,976	642,101	18.6	416,746	21,848	203,507	
	기타이전수입(기타지원금)		26,602	0.2	9,898	16,704	168.8	4,758	7,531	4,415
자 체 수 입	교수학습활동수입	104,486	1.0	106,413	△1,927	△1.8	△1,927	0	0	
	행 정 활 동 수 입	4,865	0.1	5,321	△456	△8.6	△456	0	0	
	자 산 수 입	15,262	0.1	15,262	0	0.0	0	0	0	
	이 자 수 입	7,101	0.1	7,101	0	0.0	0	0	0	
	금 융 자 산 회 수	22,010	0.2	22,010	0	0.0	0	0	0	
	기 타 수 입	25,427	0.2	25,427	0	0.0	0	0	0	
	계	179,151	1.7	181,534	△2,383	△1.3	△2,383	0	0	
지 방 교 육 채		0	0.0	0	0	-	0	0	0	
전 년 도 이 월 금		381,143	3.5	523,349	△142,206	△27.2	△142,206	0	0	

3.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내역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일반재원	목적지정		
								추경	우선확정	
합 계		10,792,467	100.0	10,131,363	661,104	6.5	309,390	87,979	263,735	
인 건 비	공무원인건비	4,623,797	42.8	4,727,204	△103,407	△2.2	△103,407	0	0	
	사립학교인건비	1,370,568	12.7	1,343,297	27,271	2.0	27,271	0	0	
	인건비 계	5,994,365	55.5	6,070,501	△76,136	△1.3	△76,136	0	0	
경 상 비	기 관 운 영 비	29,814	0.3	29,757	57	0.2	56	1	0	
	학 교 인 건 비	공 립	844,540	7.8	829,053	15,487	1.9	15,487	0	0
		사 립	74,129	0.7	72,747	1,382	1.9	1,382	0	0
		소 계	918,669	8.5	901,800	16,869	1.9	16,869	0	0
	경상비 계	948,483	8.8	931,557	16,926	1.8	16,925	1	0	
사 업 비	교육사업비	2,551,095	23.6	2,110,235	440,860	20.9	156,856	79,841	204,163	
	시 설 사 업 비	학교시설	143,171	1.3	159,889	△16,718	△10.5	△24,889	6,871	1,300
		일반시설	674,082	6.3	645,260	28,822	4.5	△24,614	1,266	52,170
		급식시설	81,543	0.8	90,034	△8,491	△9.4	△13,847	0	5,356
		소계	898,796	8.4	895,183	3,613	0.4	△63,350	8,137	58,826
	사업비 계	3,449,891	32.0	3,005,418	444,473	14.8	93,506	87,978	262,989	
지 방 채 및 BTL 상 환	지방교육채	281,535	2.6	5,727	275,808	4,815.9	275,808	0	0	
	BTL 상환	103,952	1.0	103,919	33	0.0	△713	0	746	
	지방채 및 BTL 계	385,487	3.6	109,646	275,841	251.6	275,095	0	746	
예비비 및 기타		14,241	0.1	14,241	0	0.0	0	0	0	

IV.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 1524호로 제출되어 2020년 6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¹⁾ 및 「지방재정법」 제45조²⁾ 따라 기정예산 10조 1,313억 6천 3백만원 대비 6.5%에 해당하는 6,611억 4백만원이 증액된 10조 7,924억 6천 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른 증가분 및 2019년 세계잉여금 정산분과 특별교부금 우선확정 사용분 등 목적지정 재원을 반영하고, 2020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과 초·중·고등학교 시설 시설확충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총괄 검토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611억 4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바, 이는 최근 4년간(2016~2019년) 추가경정예산의 본예산 대비 연평균 증가율 11%(1조 221억 3천 6백만원)보다 약 4.5% 정도 감소한 규모라고 하겠습니다.³⁾

1)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2)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3) 2020년도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391억 9천 2백만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75억 1천만원을 각각

[표 1] 2016~2020 추경 규모, 본예산 대비 증감액과 증감률

(단위 : 백만원)

연도	추경 예산(안)액 (A)	기정 예산액 (B)	비교증감					증액률 (C/B)
			계 (C=A-B=D+E)	일반재원(D)		목적지정(E)		
				일반재원	지방교육채	추경	우선확정	
2020	10,792,467	10,131,363	661,104	309,390	0	87,979	263,735	6.53%
2019	11,005,898	9,380,315	1,625,583	1,393,823	0	11,736	220,024	17.30%
2018	9,885,510	9,151,267	734,243	540,378	0	24,058	169,807	8.02%
2017	9,440,868	8,147,725	1,293,143	1,121,871	0	19,522	151,750	15.87%
2016	8,568,138	8,132,963	435,175	261,278	△2,112	0	176,009	5.40%

○ 이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가 감소한 주된 이유는 보통교부금의 추가 교부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본예산에 계상된 5,233억 4천 9백만원보다 1,422억 6백만원이 감소한 3,811억 4천 3백만원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순세계잉여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4)에 따라 다음 연도 세입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결산 전 당해 연도에 세입으로 이입할 수 있는 재원입니다.5)

증액편성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기준 전체 증가분은 7,078억 6백만원 규모에 불과하여 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증가액보다 9,177억 7천 7백만원이 감소하였음.

4)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하여야 한다.

제17조(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전년도 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 채무확정액과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 및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한 후에 발생한 잉여금은 제16조에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5) 순세계잉여금은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여기서 세계잉여금은 수납된 세입액에서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함.

「지방회계법」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예산회계상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등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전입금 등에서 초과세입이 발생하였거나 세출예산의 불용이 발생된 경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교육청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 과다계상 되었음에 따라 이를 감액편성 하려는 것인바, 순세계잉여금과 같은 이월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을 초과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 과다계상은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추가경정예산 제도를 통해 전년도 결산내역을 반영함으로써 이를 조정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2] 2016~2020년 순세계잉여금 반영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본예산(A)	319,104	311,863	506,772	671,796	523,349
추경예산(B)	319,104	505,441	515,188	769,861	381,143
추경증감(B-A)	0	193,578	8,416	98,065	△142,206

- 다만, [표2]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순세계잉여금 추가경정예산 반영 내역을 살펴보면, 교육청은 연평균 5,273억 9천 9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금번 순세계잉여금은 지난 4년간 평균치의 약 72% 수준인 3,811억 4천 3백만원만을 편성하였습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2.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세계잉여금 및 순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 = 수납된 세입액-지출된 세출액(결산상 잉여금)

◇ 순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명시이월금+사고이월금+계속비이월금+보조금 집행잔액)

이는 당초 본예산 편성시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전망」에 따른 불용추정액(6,287억 7천 1백만원)의 약 60%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교육청이 본예산 편성시 결산 전망에 따른 추계가 부정확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 따라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고려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임의적으로 과소 또는 과대 편성되지 않도록 잉여금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

1) 이전수입(주요사업별 설명자료 5~16pp)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 국고보조금, 특별회계전입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1,468억 8천 8백만원과 시도세, 지방교육세, 무상교육경비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 4,224억 7천 5백만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비법정이전수입 2,196억 2천 6백만원, 기타이전수입 167억 4백만원 등 기정예산 보다 총 8,056억 9천 3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러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와 같은 이전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체수입과 전년도이월금(순세계잉여금)이 각각 23억 8천 3백만원과 1,422억 6백만원 감액됨에 따라 실제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611억 4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가) 중앙정부이전수입

- 먼저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0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통지」(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1569, 2020.2.25.)와 「2020년도 정부 추경편성에 따른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 알림」(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2172,2020.3.9), 그리고 「2019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지방교

육재정교부금 정산분 교부 통지」(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2678, 2020.4.9.) 등과 각종 특별교부금 및 증액교부금이 증가하여 기정예산보다 2,092억 6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보통교부금은 2020년도 정부 추경편성에 따른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액 329억 4천 5백만원 중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75억 1천만원을 제외한 미편성 추가분 254억 3천 5백만원과 2020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른 증가액 및 추가교부액 41억 6천 6백만원을 합한 296억 1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만 보통교부금의 경우 「2020회계연도 제3차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보통교부금 수정 예정 교부 알림」(교육부 지방재정교육과-3775, 2020.6.4.)에 따라 향후 2,680억 1천 9백만원이 감액되어야 하는 상황인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세입·세출예산의 감액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향후 동 감액재원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지방채원리금상환(주요사업별 설명자료 597p) 2,758억 8백만원은 보통교부금 감액에 따른 세입보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다음으로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수요 40개 사업(86억 1천 1백만원), 지역교육현안수요 14개 사업(355억 3천 5백만원) 그리고 재해대책수요 2개 사업(116억 8천 6백만원)에 대해 558억 3천 2백만원이 목적지정재원으로 편성되었고, 6)

6) 다만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있어 특별교부금과 같은 목적지정재원을 우선확정분(61억 1천만원)과 추경편성분(497억 2천 1백만원)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이는 집행 시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집행 가능한 재원에 대해서는 우선확정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의회의 예산확정 후 집행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특별교부금 사업 중 맞춤형ICT연계교육서비스구축운영(△1천 2백만원), 직업교육선도모델운영(△3천만원), 영어회화전문강사배치(△6억 9천 5백만원), 학생안전관리강화(6천 2백만원)이 감액되었음.

국고보조금은 도서관다문화서비스지원, 초등돌봄교실시설확충, 코로나 19유치원운영한시지원 등으로 60억 9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개정으로⁷⁾ 고등학교 무상교육비가 국고보조금에서 증액교부금으로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1,209억원이 감액조정 되어 기정예산보다 1,148억 8백만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 이중 고등학교 무상교육비(이하 ‘고교무상교육비’라 함)를 살펴보면, 2020년도에는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고교무상교육이 실시되었는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정부부담액으로 1,237억 7천 4백만원이 증액교부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세입과목 변경, 앞의 3p 세입예산안 중 중앙정부이전수입 참조).

이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정부가 총 소요예산에 대해 각각 47.5%로 부담하고 일반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는 것으로 예정하여 사업비가 편성되었으나, 차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관련 안내」(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4730(2019.11.25.))에서 정부가 48%, 교육청이 47.5%

7)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보통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가 4.5%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되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이러한 변경된 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표3] 2020년도 고교무상교육비 분담액과 분담률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정부	교육청	일반지자체	계
분담액	123,774	112,631	11,457	257,862
분담률	48	47.5	4.5	100

○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전입금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2020년도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 안내」(교육부 유아교육 정책과-1118, 2020.2.21.)에 따라 누리과정지원금 단가 인상 및 어린이집 교원 처우개선비가 추가로 반영되어 기정예산보다 524억 9천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⁸⁾

나) 자치단체이전수입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치단체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은 4,224억 7천 5백만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⁹⁾ 따른 시도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지방교육세전입금과 「지방세법」 제69조¹⁰⁾ 및 같은

8)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음.

9)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드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자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자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道)는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법 시행령 제75조에¹¹⁾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그리고 무상교육 경비전입금이 반영된 것입니다.

- 그 밖의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비법정이전수입은 고교무상교육비 과목경정에 따라 57억 2천 8백만원이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세입과목 변경, 앞의 3p 세입예산안 중 중앙정부가이전수입 참조),

무상급식(1~8월)을 비롯해서 꾸미고꿈꾸는학교화장실, 학교급식환경개선,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등을 위한 목적지정재원으로 인하여 광역자치단체이전수입이 기정예산 보다 1,377억 4천 1백만원, 기초자치단체이전수입이 기정예산 보다 818억 8천 5백만원이 증가하여 총 2,196억 2천 6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 기타이전수입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기타이전수입 중 민간이전수입은 「(가칭)양원초: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시설 설치 위수탁 협약」(2019.10.16.)에 따른 (가칭)양원초 신설 설치부담금 101억 7천 3백만원과 「서울개봉 지구 및 서울남부교정시설부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관련 학생배치를 위

10)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0분의 15 중 10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등에 충당한다.

11) 제75조(안분기준 및 안분방식) ① 법 제71조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한 부분과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하 "취득세등"이라 한다)의 보전에 충당하는 부분에 각각 15분의 9와 15분의 6의 비율로 구분하여 안분하고, 그 안분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제3항은 제외한다), 제76조 및 제77조에서 "시·도"라 한다]의 안분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분액을 달리 산출할 수 있다.

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text{해당 시·도 교육청의 안분액} = (A \times B) \times C - D$$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B: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

C: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시·도 교육청의 보통교부금 배분비율

D: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시·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한 기부채납 협약 이행사항 확인 및 합의서」(2017.7.29.)에 따른 고척 초 교실증축 8억 3천 7백만원, 「영신초 교사 증축 무상공급 협약서 변경(안)」(2020.2.20)에 따른 영신초 교실증축 6억 1천 9백만원, 그리고 「상아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당서초 학생배치를 위한 기부채납 협약서」(2020.2.3.)에 따른 당서초 학교환경개선사업비¹²⁾ 6억 6천 6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SW교육선도학교운영 5억 9천만원과 과학행사(스마트팜 등) 운영 지원 1천 2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어 민간이전수입은 기정예산보다 총 128억 9천 7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 이중 (가칭)양원초 신설은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 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동 설치부담금 101억 7천 3백만원은 한국주택공사(LH공사)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제4항에¹³⁾ 따라 부담해야 하는 녹지축소 개발이익금과 LH공사와 중량구청이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한 복합화 시설비가 합해진 금액으로 당초 관리계획상의 LH공사 예상지원금 100억 4천 3백만원보다 다소 증가한 규모라고 하겠습니까.¹⁴⁾

12) 방송장비개선 9천 7백만원, 교실바닥개선 2억 5천 5백만원, 내부도장 9천 3백만원, 엘리베이터설치 2억 2천만원

13) 제4조의2(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① 제4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소공원 및 조경녹지를 포함한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시·도 교육청에 무상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의 수·규모, 학교부지에 설치하는 소공원 및 조경녹지, 개교시기 및 설립비용 등에 관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해당 개발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기준면적에서 개발사업면적의 최대 100분의 1을 뺀 면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확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를 축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이 제4항에 따른 개발이익보다 많을 경우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그 차액을 확정하고 교육감이 부담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 무상공급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4) 「양원공공주택지구 내 학교시설 설치 위수탁 협약 관련 위탁수수료 지급 요청」(행정지원과-3294, 2020.4.13.) : 1억원

「양원지구 학교시설 설치 위·수탁 협약 관련 학교시설 설치비용 지급 요청」(행정지원과-4135, 2020.5.15.) : 100억 7천 3백만원

다만, 동 재원은 협약에 따른 목적이 지정된 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가 경정예산안에서는(주요사업별 설명자료 573p) 이를 일반재원으로 분류하여 설치부담금 중 일부만을(54억 1천 5백만원) 시설비로 반영하고 나머지 47억 5천 8백만원은 동 사업과 무관한 다른 사업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교육청이 동 설치부담금 전액을 본래 사업비로 편성하더라도 그 집행에 있어서 (가칭)양원초가 2022년 3월 개교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규모와 공사기간 등을 감안할 경우 올해 대부분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다는 물리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사업완료에 장시간이 소요되면서 사업재원도 특정사업만을 위한 목적지정재원이라면 동 설치부담금과 같은 사업비의 경우에는 이를 계속비로 편성하는 것이 특정재원의 활용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이 「202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는 시설사업비의 경우 그 집행에 2회계연도 이상 걸리는 사업이라면 계속비로 편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목적지정재원을 일반재원으로 편성하여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활용하는 것은 목적지정재원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이처럼 사업목적이 지정된 민간이전수입의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는 등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그 밖에 기타이전수입 중 자치단체간이전수입은 전국연합학력평가실시에 따른 부담금 35억 4천 7백만원과 유아교육력제고에 따른 사업비 2억 7천 7백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액편성 되었고, 교육연수원에서 실시예정인 제주교육청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는 연수인원 조정으로 기정예산보다 1천 8백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2) 자체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9~27pp)

- 다음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체수입을 살펴보면, 기본적교육수입은 공립고 1학년생이 916명 감소함에 따라 수업료가 기정예산보다 11억 5천 7백만원 감액되었고, 선택적교육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어 체험 캠프 이용 취소와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장기 휴관 등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7억 7천만원 감액되었으며, 사용료및수수료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영장 등 시설물의 휴관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5천 6백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2019년도) 결산 완료에 따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보다 1,422억 6백만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앞의 '가. 총괄검토' 6~8pp참고).

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

1) 세출예산 규모와 구조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611억 4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나, 이중 사업별 우선확정 사용분 2,637억 3천 5백만원과 예산성립 후 집행할 목적지정지원금 879억 7천 9백만원, 그리고 지방교육채 상환의 2,758억 8백만원과 경상비 증가분 169억 2천 5백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세출사업별 가용재원은 172억 5천 7백만원에 불과하다 하겠습니다.
- 특히 교육청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교원 명예퇴직수당 863억 5천 5백만원과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218억 2천 3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으로 급식비의 과다 불용액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137억 4천 5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운용 역시 동일한 사유로 60억 2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사업비의 경우도 공사중단 및 지연 등으로 연도내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들에 대해 633억 5천만원을 감액하는¹⁵⁾ 등

15) 2016~2020년 추경 편성 시 교육사업비 대비 시설사업비 비율

일반재원 중 총 1,949억 7천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 2020학년도 2학기 고1 무상교육 조기 도입

- 정부는 지난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21년부터 고등학교 모든 학년에 대해 확대하기로 하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공무원자녀 학비지원 등 고교 학비 지원 사업)을 제외한 총 소요액을 국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16)

그러나 교육청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비로 452억 3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정부가 지난해 4월 9일 당·정·청 협의에서 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에 따른 고교무상교육 로드맵과 「초·중등교육법」 부칙<법률 제16672호, 2019.12.3> 제1조보다17) 한 학

(단위: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교육사업비	3,032,005,715	3,123,681,109	3,493,752,717	2,204,643,755	2,551,094,834
시설비	613,131,099	727,120,522	832,706,165	1,064,352,075	898,796,251
시설사업비 비율	20.2%	23.3%	23.8%	48.3%	35.2%

16) 정부는 완성연도(전학년 실시) 기준으로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 고등학교 무상교육 연도별 총 소요액 추계 >

시기	대상학년	인원	총 소요액
'19년 2학기	3학년	49만명	3,856억원
'20년	2, 3학년	88만명	13,882억원
'21년	전학년	126만명	19,951억원

* 시도별·급지별 수업료는 상이하나, '18년 기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의 연평균액 1,582천원을 적용하여 추계.

* 상기 금액은 추계 결과로서 실제 소요금액과 다를 수 있음.

17)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1. 2020학년도: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
2. 2021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

기 먼저 시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 참고로 현재 서울을 비롯하여 강원, 경남, 대전, 부산, 세종, 울산, 인천, 충북 등 8개 시·도교육청에서도 2학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을 조기 도입하기로 발표한바 있습니다.

[표4]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무상교육 지원 대상	사업부서	구분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편성액
공립고·방통고·각종학교 (수업료)	교육재정과	교육사업비	기타교육비지원	고교무상교육	13,514
공립고 ¹⁸⁾ ·각종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예산담당관	학교운영비	학교운영비지원	학교기본운영비	4,670
방통고 (학교운영지원비)	예산담당관	학교운영비	학교운영비지원	학교기타운영비	17
사립일반고 및 특성화고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교지원과	학교운영비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인건비재정결함보조	27,038
합 계					45,239

-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개학연기로 학교등교가 본래 개학일보다 무려 99일이 지난 6월 8일이 되어서야 마무리 되었는데, 1학기의 경우 학생들이 등교 수업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¹⁹⁾

특히 향후 코로나19 확산정도에 따라 2학기 등교 수업 정상화 여부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의 조기 시행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8) 마이스터고 지원금으로 지원되는 서울로봇고와 서울도시과학기술고는 제외

19)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등학교 학비 감면을 요청하는 청원이 접수되어 있음(2020.5.12.).

[표5]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일지

일자	코로나19 등교 수업 주요 일지
2월 23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개학 일주일 연기 발표(전국 단위 첫 학교 휴업령)
3월 2일	2주일 추가 연기(2차 개학 연기)
3월 17일	2주일 추가 연기(3차 개학 연기)
3월 31일	온라인 개학발표(4차 개학 연기)
4월 9일	고3, 중3 온라인 개학
4월 20일	초1~3 온라인 수업 합류로 온라인 개학 마무리
5월 4일	순차적 등교 수업 발표
5월 11일	등교 수업 1주일씩 연기 결정
5월 20일	고3 등교
6월 8일	중1과 초5~6 등교로 모든 학생 등교 마무리

○ 다만, 향후 교육청은 2,680억 1천 9백만원의 세입감소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동 사업의 모든 재원을 100%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바,

재정운용의 건전성 측면에서 고1 학년에 대한 고교무상교육비 조기 시행은 교육청의 재정여건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접근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실·국별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

1) 대변인

가) 공익캠페인및시책홍보(주요사업별 설명자료 35~37pp)

① 사업 개요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대변인 소관의 공익캠페인및시책홍보비가(광고비) 증액편성 되었는데, 교사, 학생 및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등의 옥외광고와 신문 등의 인쇄광고, TV 등의 방송광고, 포털사이트 등의 인터넷광고 등을 위한 광고제작비라 하겠습니다.

② 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도			2019년도
	본예산 (A)	추경 증감 (B)	추경 예산 (A+B)	최종예산
공익캠페인및시책홍보	2,674,260	250,000	2,924,260	2,828,460
광고	1,838,900	250,000	2,088,900	1,989,200

○ 광고제작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5천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표6] 2020년 광고비 집행(예정)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집행 분야	기집행액	집행 예정액	합계	비 고(대표 예시)
1	인쇄, 인터넷	299,338	674,400	973,738	- '개학 맞이' 269,214천원 - '교권보호' 42,124천원
2	영상	73,860	548,116	621,976	- '혁신학교(JTBC)' 100,000천원 - '5.18. 40주년(광주MBC)' 25,000천원 - '정책 샌드아트' 24,660천원 - '학교공간혁신' 24,220천원
3	라디오음성	184,605	368,225	552,830	- MBC 라디오 음성광고 : 매월 24,200천원 (2020.10.까지 계약) - 교통방송 라디오 음성광고 : 매월 16,500천원 (30일 기준) - (주)케이에프엔애드콤 : 음원 제작 1건 단가 4,400천원(총 10건 예상)
4	포털 브랜드 검색	182,336	220,164	402,500	- 네이버 PC 및 모바일과 다음 PC 브랜드검색, 제작 : 매월 22,176천원 · 다음 모바일 광고비 : 매월 변동 · 포털광고 제작 및 홍보 115,300천원
5	옥외	31,372	62,744	94,116	- 옥외 : 매월 7,843천원 · (주)양진텔레콤 음성 광고 : 매월 버스 2,970천원, 지하철 3,300천원 · (주)세종미디어그룹 조명 광고 : 매월 지하철 5호선(광화문역, 서대문역) 1,573천원
합 계		771,511	1,873,649	2,645,160	

※ 2020. 5. 31. 기준 '공익캠페인 및 시책홍보' 사업의 광고 예산(2,645,160천원)중 약 29% 가량의 금액(771,513천원)이 집행되었음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동 사업비는 지난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 실효성 부족 등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어 2억 5천만원이 감액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일상생활 보전 수칙과 이에 따른 온라인 수업 홍보, 그리고 가칭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서울교육 홍보’ 영상 제작과 방송 등의 필요성을 이유로 예산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전 수칙 등의 홍보는 질병관리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건복지부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온라인 수업 등의 경우에도 교육부에서 개학과 등교, 온라인 수업 등에 대해 전국적으로 안내 하는 등 이미 중앙부처 차원에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교육청이 의회에서 이미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 및 실효성 부족으로 감액한 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증액 요인 없이 이를 재차 증액편성 하려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교육청이 동 사업의 긴급성, 필요성, 다른 사업과의 차별성과 그로 인한 효과성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동 광고제작비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예산담당관

가) 공무원(교원, 전문직, 지방공무원)인건비(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30~133pp)

① 사업 개요

- 동 예산은 정규직 공무원의 보수 및 법정부담금, 명예퇴직수당과 맞춤형 복지비 등의 인건비로 교원 정원 감소에 따른 보수 감액과 최근 3년간의 결산내역을 바탕으로 한 명예퇴직수당의 조정, 그리고 저경력·하위직(9급 및 5년미만 8급)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복지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② 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도			2019년도
	본예산 (A)	추경 증감 (B)	추경 예산 (A+B)	최종예산
공무원 인건비	4,369,103,421	△108,178,060	4,260,925,361	4,366,732,573
보수	3,495,679,372	△26,548,049	3,469,131,323	3,442,959,994
직급보조비	23,155,800	1,045,200	24,201,000	23,581,070
법정부담금	681,327,729	3,500,159	684,827,888	709,960,142
명예퇴직수당	114,194,000	△86,975,370	27,218,630	132,755,000
맞춤형복지비	54,746,520	800,000	55,546,520	57,476,367

- 교육청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공무원 인건비로 보수는 265억 4천 8백만원, 명예퇴직수당은 869억 7천 5백만원을 기정예산보다 감액편성하였고, 직급보조비와 법정부담금, 맞춤형복지비는 각각 10억 4천 5백만원과 35억, 그리고 8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중 맞춤형복지비 8억원은 저경력·하위직(9급 및 경력 5년미만 8급) 공무원 1,600명에게 기본점수를 500점(5만원) 인상하려는 것으로, 맞춤형복지비는 [표7]과 같이 2017년부터 2020년 본예산까지 연평균 약 13%의 비율로 증액편성 되어왔고, 현재 교육청의 재정여건은 향후 세입감액을 예정하고 있는 등 재정여건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특정 직급만을 위한 맞춤형복지비의 증액편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 7] 2015~2020년 맞춤형복지 내역

(단위: 천원)

연도	구분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직	계약제교원	합계
2015	예산	4,592,765	31,322,465	5,974,050		41,889,280
	보험료지출액	8,230,116		2,089,202		10,319,318
	1인 평균 배정액	641	641	350		
	1인 평균 보험료	140	140	133		
	비율(보험료/배정액)	22%	22%	38%		
	전년 대비 증가율	-5.86%	-7.57%	4.22%		
2016	예산	4,525,460	31,428,230	6,056,000	1,982,250	43,991,940
	보험료지출액	10,533,873		1,812,473	202,358	12,548,704
	1인 평균 배정액	641	641	350	350	
	1인 평균 보험료	182	182	116	33	
	비율(보험료/배정액)	28%	28%	33%	10%	
	전년 대비 증가율	-1.47%	0.33%	1.37%	100%	
2017	예산	5,231,460	36,338,640	7,307,500	2,100,000	50,977,600
	보험료지출액	10,479,398		1,685,381	347,467	12,512,246
	1인 평균 배정액	741	741	450	350	
	1인 평균 보험료	185	185	103	59	
	비율(보험료/배정액)	25%	25%	23%	17%	
	전년 대비 증가율	15.60%	15.62%	20.66%	5.94%	
2018	예산	5,549,160	38,545,440	8,181,000	2,700,000	54,975,600
	보험료지출액	11,799,033		1,962,630	467,895	14,229,558
	1인 평균 배정액	786	786	450	450	
	1인 평균 보험료	216	216	118	58	
	비율(보험료/배정액)	28%	28%	26%	13%	
	전년 대비 증가율	6.07%	6.07%	11.95%	28.57%	
2019	예산	7,321,220	50,155,147	8,181,000	4,200,000	69,857,367
	보험료지출액	12,681,704		1,707,278	420,570	14,809,552
	1인 평균 배정액	953	953	500	520	
	1인 평균 보험료	219	219	105	54	
	비율(보험료/배정액)	23%	23%	21%	10.4%	
	전년 대비 증가율	31.93%	30.12%	-	55.56%	
2020	본예산(추경예산안)	7,321,220 (8,121,220)	47,425,300	8,181,000 (8,523,000)	4,900,000 (5,390,000)	67,827,520 (69,459,520)
	보험료지출액	7,158,641		1,002,930	417,923	8,579,494
	1인 평균 배정액	946	946	500	598	
	1인 평균 보험료	128	128	62	52	
	비율(보험료/배정액)	14%	14%	12.4%	8.7%	
	전년 대비 증가율	0.00% (10.93%)	-5.44%	0.00% (0.04%)	16.67% (28.33%)	

나) 계약제교원인건비(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34~136pp)

① 사업 개요

- 동 예산은 정규교원의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기간제교원의 보수 및 법정부담금과 맞춤형 복지비 등의 인건비로서 산업재해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인상분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② 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도			2019년도
	본예산 (A)	추경 증감 (B)	추경 예산 (A+B)	최종예산
계약제교원인건비	264,402,252	4,082,431	268,484,683	246,310,314
보수	218,877,055	3,132,501	222,009,556	201,954,960
법정부담금	24,345,197	459,930	24,805,127	23,875,354
퇴직금	16,280,000	-	16,280,000	16,280,000
맞춤형복지비	4,900,000	490,000	5,390,000	4,200,000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약제교원인건비는 보수 31억 3천 3백만원, 법정부담금 4억 6천만원, 맞춤형복지비 4억 9천만원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40억 8천 2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보수 증가분은 본예산 편성인원 4,182명보다 68명 정도의 정원 외 증가가 예상되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처우개선비와 강사수당 등을 반영하여 증액편성 되었습니다(〔붙임 참고)).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동 인건비와 관련해서 교육청의 [표8]의 ‘2016~2019년도 계약제교원 인건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연평균 2,298억 8천 5백만원의 예산현액에 대해 2,185억 7천 2백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4%인 113억 1천 3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8] 2016~2019년도 계약제교원인건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2016	203,999,350	200,337,619	3,661,731
2017	222,016,859	213,576,036	8,440,823
2018	247,112,269	223,306,028	23,806,241
2019	246,410,314	237,068,141	9,342,173
평균	229,884,698	218,571,956	11,312,742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도 이러한 결산내역을 반영한다면 2,684억 8천 5백만원의 약 4%인 107억 3천 9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바, 교육청이 정규교원의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기간제교원의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법정부담금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적정규모의 인건비를 확보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되는 측면도 있으나, 그동안의 계약제교원인건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의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기정예산만으로도 충분히 집행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 교육청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를 증액편성 할 경우에는 보다 면밀한 추계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3) 참여협력담당관

가) 국제교류업무추진(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58~160pp)

① 사업 개요

○ 동 사업비는 외국협력기관과의 교육정책 및 방문교육교류 자료 통·번역을 전문업체에 의뢰하기 위해 증액편성된 예산입니다.

② 예산안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세부사업	사업명	세세부사업	주요내용	본예산	추경 증감	추경 예산안
감사관	감사관리	반부패청렴 정책추진	청렴도 우수국가 연수	청렴도 우수국가 연수	20,000	△20,000	0
총무과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국외연수	함께하는 테마 연수	274,500	△210,000	64,500
예산담당관	행정개선활동지원	평생교육기관 행정개선 활동지원	기타사업운영	어린이도서관 국제교류 협력사업	152,020	△4,900	147,120
참여협력 담당관	국제교육문화 교류협력 지원	국제교류 업무추진	외국협력기관 방문교육교류	통·번역료	50,000	7,000	57,000
			국제교류활성화지원	글로벌 역량강화 아카데미	80,800	△80,800	0
				서울교육 글로벌 나눔사업	50,790	0	50,790
				해외 서울교육봉사단	69,800	0	69,800
초등교육과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	「우리가꿈꾸는교실」교실 혁신지원	「우리가꿈꾸는교실」교실 혁신지원운영	「우리가 꿈꾸는 교실」 해외 교실혁신 사례 탐구 및 교실혁신 홍보	185,650	△80,000	105,650
중등교육과	외국어교육 활동지원	제2외국어 교육활동지원	제2외국어교사국외연수	제2외국어교사 국외연수	16,000	△7,500	8,500
체육건강문화예술과	학교환경 위생관리	교육환경 보호위원회 운영	교육환경보호 제도 담당국외연수비	국외훈련여비	2,000	△2,000	0
진로직업 교육과	특성화고 운영지원	직업계고 창의인재양성 프로그램	해외창의도시 탐방	해외창의도시 탐방	200,000	0	200,000
학교지원과	사학기관 관리	학교법인 운영지도	사학업무 제도개선 관리	사학기관 우수직원 국외사학 연수	54,900	△40,000	14,900
교육연구 정보원	교육연구 운영지원	교육연구 개발지원	국내외학술 교류	국내외학술교류	138,200	△47,280	90,920

○ 교육청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국제교류업무추진의 외국협력기관 방문교육교류 사업으로 통·번역료를 기정예산 보다 7백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제교류업무와 관련하여 현재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대만 등 149개국), 격리(미국 등 10개국),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인도 등 25개국)²⁰⁾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해외방문 등의 국제교류업무 자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의 국제교류 관련 사업별 담당부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해외방문 등의 연수비를 대부분 감액하는 등 사업을 축소하거나 취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러나 참여협력담당관은 국제교류업무추진의 외국협력기관방문교육교류 사업으로 통·번역료 7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바,

당초 5천만원의 항공료 등 여행경비가 집행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업을 축소·취소하거나 사업내용을 변경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기존 예산은 유지한 채 오히려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추진의 불확실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교육정책국

가) 서울형자유학기제운영(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26p)

① 사업 개요

- “서울형자유학기제운영” 사업은 학교와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을 개발·지원하여 자유학기제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 외교부,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2020.6.9. 기준

로 학생활동 중심 수업, 체계적인 진로탐색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20년도			2019년도
	본예산 (A)	추경 증감(B)	추경 예산(A+B)	최종예산
계	602,260	85,027	687,287	1,163,600
(단위학교)자유학년제 운영 지원	-	-	-	1,007,500
자유학기제 연수 지원	259,840	29,947	289,787	73,800
자유학기제 운영 기반 구축	342,420	55,080	397,500	27,300
교육지원청 지원	-	-	-	55,000

- “서울형자유학기제운영” 사업은 본예산 보다 8천 5백만원이 증가한 6억 8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증액은 2019년 자유학년제 관련 특별교부금 잔액을 ‘자유학기제 연수 지원’ 및 ‘자유학기제 운영 기반 구축’ 사업에 편성한 것으로²¹⁾, 자유학년제 운영을 위한 교원 직무연수, 자유학년제 수업·평가 내실화를 위한 자료개발 및 현장지원단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20년도 서울시교육청 자유학기(학년)제 관련 사업의 자체예산은 자체목적사업(서울형자유학기제운영) 중 ‘(단위학교)자유학년제 운영 지원’ 예산(9억 5천 8백만원)을 학교기타운영비로 변경하면서 2019년 대비 51억 1천 3백만원 증액된 62억 2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표9〕 참조).

특히, 본예산에서 자체목적 사업(서울형자유학기제운영) 중 ‘자유학기제 연수 지원’의 예산은 2019년 대비 1억 3천 6백만원 증액된 2억 1천만 원이 편성되었고, ‘자유학기제 운영 기반 구축’ 사업은 2019년 대비 2억 1천 5백만원이 증액된 2억 4천 2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바(〔표9〕 참조),

21) 교육부(2020.4.6.), ‘2019년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사용계획 승인 알림(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현재 자유학기(학년)제 관련 사업의 자체예산은 2019년 대비 상당히 큰 규모로 증액된 상황입니다.

[표9] 2020년도 서울시교육청 자유학기(학년) 관련 자체예산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정책 사업	세세부사업	구분	2020년도	2019년도	전년대비증감
			본예산 (A)	본예산 (B)	
		계	6,227,260	1,113,600	5,113,660
교수 학습 지원	서울형자유학기제 운영	(단위학교)자유학년제 운영 지원	-	957,500	△957,500
		자유학기제 연수 지원	209,840	73,800	136,040
		자유학기제 운영 기반 구축	242,420	27,300	215,120
		교육지원청 지원	-	55,000	△55,000
학교재정 지원관리	학교기타 운영비	(단위학교)자유학년제 운영지원	5,775,000	-	-

○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특별교부금 집행 잔액 사용계획 승인을 요청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자체목적 사업(서울형자유학기제 운영) 중 ‘자유학기제 연수 지원(3천만원)’ 및 ‘자유학기제 운영 기반 구축(5천 5백만원)’ 사업으로 예산을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자유학기제 연수 지원’ 및 ‘자유학기제 운영 기반 구축’ 사업의 2020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자유학기제 연수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률은 40.1%, ‘자유학기제 운영 기반 구축’ 사업의 집행잔액률은 93.6%에 이르고 있는바([표10] 참조),

[표10] 2020년도 서울형자유학기제운영 예산 집행 현황22)

(단위 : 천원, %)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잔액률
자유학기제 연수 지원	259,840	155,537	0	104,303	40.1%
자유학기제 운영 기반 구축	342,420	22,030	0	320,390	93.6%

향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집합연수 및 협의회 운영 등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2020년에 두 사업에서 적지 않은 집행잔액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비 증액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삭감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협력학습참여적수업지원(주요사업별 설명자료 328p)

① 사업 개요

- “협력학습참여적수업지원”은 초등학교에 스마트 교사 연구실 및 자료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래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교원들의 수업 및 평가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20년도			2019년도
	본예산 (A)	추경 증감(B)	추경 예산(A+B)	최종예산
계	21,120	260,700	281,820	28,620
협력적 평가 방법 개선 지원	21,120	-	21,120	28,620
꿈꾸는 연구실 구축 지원	-	220,700	200,700	-
공유 시스템 구축 지원	-	40,000	40,000	-

22) 2019년 6월 10일 기준.

- “협력학습참여적수업지원” 사업은 본예산 보다 2억 6천만원(1,200% 이상)이 증가한 2억 8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동 사업 중 ‘꿈꾸는 연구실 구축 지원’과 ‘공유 시스템 구축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으로,

‘꿈꾸는 연구실 구축 지원’은 초등학교(11개교) 원격 수업에 대비하여 교사 연구실 및 영상 촬영을 위한 부스 구축 사업이고, ‘공유 시스템 구축 지원’은 학교 간 원격수업 운영 콘텐츠 및 학습자료 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²³⁾.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꿈꾸는 연구실 구축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수업의 대체방식으로서 원격수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변화된 교육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부스를 구축하고 교사들의 수업관련 회의 및 연구 활동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러나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부스와 관련하여 현재 초등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서 활용하는 콘텐츠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e학습터, 에듀넷·티 클리어, EBS 등 국가에서 개발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도 집콕놀이, 스스로 학습 등 교육

23) ‘꿈꾸는 연구실 구축 지원’ 및 ‘공유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예산액 및 세부내역

사업명 (세세세부 사업)	세부내역	산출기초	예산액 (단위: 천원)	비 고
꿈꾸는 연구실 구축 지원	학교회계전출금	20,000,000원×11교	220,000	리모델링 비품구입비
	운영비	500,000원×1식	500	운영수당 사무용품비
	업무추진비	20,000원×10명×1회	200	사업추진경비
합 계			220,700	
공유 시스템 구축	운영비	36,100,000원×1식	36,100	운영수당
		2,250,000원×1식	2,250	물품구입
	업무추진비	25,000원×66명×1회	1,650	사업추진경비
합 계			40,000	

청 차원에서 다양한 학습자료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표11] 참조).

이와 같이 현재 초등학교는 원격수업에서 개별 교사들이 개발한 학습자료보다 국가 및 교육청 차원에서 개발된 학습자료 콘텐츠 활용률이 월등히 높은 상황이며,

코로나19로 인해 향후 원격수업이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원격수업의 학습자료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는 향후 국가 및 교육청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문제로, 현재 이런 상황에서 개별학교 차원의 영상 촬영 시설을 시급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약 600개의 초등학교 중 단지 11개의 초등학교에 이와 같은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11] 초등학교 원격수업 관련 주요 플랫폼 및 자료

플랫폼 명	운영기관	주요 내용
e학습터	17개 시도 통합 운영	• 초등 1학년 ~ 중학교 3학년까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중심의 학습동영상 및 평가문항 제공
에듀넷·티-클리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초등 1학년~ 중학교 2학년까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다양한 교육과정 연계된 동영상 및 평가문항 제공
디지털교과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기존 교과 내용에 멀티미디어가 포함된 교과용 도서로, 초등 3~6학년(사회, 과학, 영어) / 중학교 1~3학년(사회, 과학, 영어) 고등학교(영어, 영어 I, 영어회화, 영어 독해와 작문) 대상
EBS 강좌	한국교육방송공사	• 모든 학년의 교과 교재 선택가능
집콕놀이, 스스로 학습, 집콕 독서 프로그램	서울시교육청	• 영상 및 놀이방법에 대한 QR코드 제공, 놀이자료집 및 교과별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독서 프로그램 제공 등

○ 한편,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부스 이외의 공간은 교사들의 수업 관련 공동 작업 및 소규모 회의가 가능한 교사 전용 연구실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 구축은 원격수업과는 별개로 그동안 교육청이 수업혁신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으로, 동 사업(교사 전용 연구실 구축)이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을 빌미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야 할 만큼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음으로, ‘공유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은 수업자료 공유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이 아니라 구글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들이 수업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탐색·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동 사업은 이미 기정예산에 반영된 ‘「우리가 꿈꾸는 교실」 교실 혁신지원’ 및 ‘안성맞춤교육운영지원’ 등의 사업으로 추진 중인 자료집 개발 및 영상자료 보급, 교실혁신 관련 나눔 워크숍 운영, 교육과정홍보 사업 등을 활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동 사업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신규편성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인사관리(사업별 설명자료 343p)

① 사업 개요

- “인사관리” 사업은 교권 침해 교원의 치유, 학교 업무 지원 인력의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20년도			2019년도
	본예산 (A)	추경 증감(B)	추경 예산(A+B)	최종예산
계	1,603,984	244,952	1,848,936	1,694,798
각종위원회운영및관리	51,600	-	51,600	53,160
교권보호	441,310	21,000	462,310	496,280

교사전보	318,000	25,952	343,952	346,704
교원복지	150,000	-	150,000	150,000
교원성과상여금	440	-	440	900
교원자격관리	1,700	-	1,700	2,180
사립교원인사관리	9,124	-	9,124	12,804
인사관리	631,750	198,000	829,750	632,770

○ “인사관리” 사업은 본예산 보다 2억 4천 5백만원이 증가한 18억 4천 9백만원으로, 동 사업 중 교권보호 사업의 교원치유프로그램 운영비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찾아가 동료 교사들과 함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교육청은 교원치유프로그램 운영비를 본예산 대비 2천 1백만원 증액편성하였는바, 이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7개 학교에 각각 3백만원을 계상한 것으로,²⁴⁾ 사업 대상 학교 수를 본예산(6개 학교, 1천 8백만원) 보다 확대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은 동 사업예산의 증액 사유를 교권보호와 관련된 특별교부금 사업의 일몰로 인하여 예산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동 사업은 지난 수년간 교육청의 일반재원과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통해 진행되어 왔습니다.

○ 그러나 금년에 편성된 예산에서 교원들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학기 초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각종 연수 및 협의회 등 교원들이 대면하여 추진하는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4) 교원치유프로그램 추가경정 예산안 소요예산: 3,000 천원 X 7개 학교 = 2,1000 천원

따라서 동 사업 방식이 학교 전체 교사들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육청이 2019년을 기준(11개 학교 대상)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예측하여 집단상담 학교 수를 추가하여 증액하는 것은 오히려 상당한 규모의 집행잔액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바, 동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는 삭감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12] 2020년 교원치유프로그램 운영비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률	지출액 세부 내역 (변경사용 내역)
교원치유 프로그램	18,000	5,750	12,250	68.%	○심층상담지원비 ○교원심리치료지원비

3) 평생진로교육국(민주시민생활교육과)

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사업별 설명서 440p)

① 개요

○ 동 사업은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연차적 적립·조성 및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전략적 준비를 통해 교육분야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② 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도			2019년도
	기정예산 (A)	추경증감 (B)	추경예산(A+B)	최종예산
계	-	1,000,000	1,000,000	-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	1,000,000	1,000,000	-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으로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교육청과 서울특별시민의 남북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적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운용되는 것으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국제정세, 남북관계 여건 변화 등에 따른 사업의 불확실성 해소 및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사업운영을 통해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억원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으로 전출하기로 하였으나, 동 조례에는 기금의 재원을 “출연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현행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르면 기금조성 전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8월에 예정된 4차 추경시 중기재정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자원조성을 규정한 상기 조례 제14조제2항에 대해서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교육행정국

가) 사학기관 운영평가(사업별 설명자료 539p)

① 개요

○ 교육청은 서울관내 전체 140개 법인 중 123개 법인을 대상²⁵⁾으로 법인재정과 운영, 학교행정 등 3개 평가영역 7개 평가항목 및 25개 평가지표를 통해 사학기관의 운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교육청은 사학 관계자를 중심으로 12명의 사학기관 운영평가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사학기관운영평가를 통해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 등을 높이고 기관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은 평가우수법인으로 선정된 우수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총 9개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6백만원에서 1천 1백만원까지 총 7천만원의 우수기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표13] 사학기관 운영평가 평가체계

평가영역	비중	평가항목	평가지표 수	배점	평가기구	
Ⅰ. 법인재정	30%	1. 법정부담금의 적정성	3	13	사학기관 운영평가단	
		2. 수익용기본재산 관리의 적정성	4	12		
Ⅱ. 법인운영	40%	1. 법인이사회 운영 정확성	3	11		
		2. 법인 운영 및 관리의 공공성	3	14		
		3. 교직원 인사관리 적정성	4	15		
Ⅲ. 학교행정	35%	1. 학교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5	22		
		2. 학교행정의 효과성	3	13		
3개 영역	100%	7개 항목	25개	100점		
가 점		교원 신규임용 위탁선발 실시		+2		
감 점		관할청 행정처분 미이행		(-5)		
		학교급식 운영 부적정		(-5)		

25) 유치원 또는 각종학교만 경영하는 법인 10개, 재단법인 5개, 학교 미설치법인(경남학원, 청남학원) 등 17개 법인은 제외

[표14] 2019년 사학기관 운영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내역

포상 부문		포상 대상	지급액(천원)
종합평가 우수기관 (6개)	종합 금상	서울현대학원 (현대고)	11,000
	종합 은상	중동학원 (중동중.고)	9,000
	종합 우수상	남강학원 (남강중.고) 해성학원 (해성여고, 해성국제컨벤션고) 배명학원 (배명중.고) 영도의숙 (영도중, 강서고, 영등포공고)	1개 법인 각 8,000
평가영역별 우수기관 (3개)	법인재정 우수상	양정의숙 (양정중. 고)	6,000
	법인운영 우수상	금성학원 (금성초)	6,000
	학교행정 우수상	동원학원 (한영유 . 중 . 고 . 외고)	6,000
계		9개 학교법인	70,000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20년도			2019년도
	기정예산 (A)	추경 증감(B)	추경 예산 (A+B)	최종예산
계	77,140	20,000	97,140	78,600
사학기관 운영평가단 운영	7,140	-	7,140	8,600
평가 우수법인 인센티브 지원	70,000	-	70,000	70,000
평가 우수학교 인센티브 지원	-	20,000	20,000	-

○ 사학기관 평가를 위한 ‘사학기관운영평가’ 사업은 사학기관 운영평가단 운영과 평가우수법인에 대한 인센티브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평가우수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예산 2천만원을 새롭게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동 사업은 사학기관 운영평가 후 3개의 평가항목 중 ‘학교행정영역’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4개교에 대하여 5백만원씩 총 2천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교육청이 이미 동 사학기관운영평가에 따른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 평가된 3개 평가영역 중 한 개 영역만을 기준으로 다시 우수학교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추가지원을 하는 것은 단일평가 기준에 따른 중복지원으로 사료되는바,

이러한 방식이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라는 사업추진 목표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 그 효과성에 의문이 있다 할 것입니다.

○ 더욱이 사학기관의 재정 및 운영, 그리고 학교행정에 대한 지도·감독은 교육청의 본래 권한으로써 사학기관운영평가는 지도·감독의 하나의 방식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은 사학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 예산편성은 사학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다는 점에서 예산 배분의 효과성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나) 인건비재정결함보조(사업별 설명자료 550p)

① 개요

○ ‘재정결함보조금’은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는 학교(사립초, 국제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를 제외하고 공립학교 수준으로 수업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립고등학교와 의무교육시행으로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는 사립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부족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청은 사립 중·고·특수학교 294개교를 대상으로 교직원의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소요액 중 재정부족액을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는 사립 중학교 및 의무교육기관인 특수학교에는 운영비 재정 부족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 15] 2020회계연도 재정결함보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본 예산(A)	비고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	물 량	294개교 (사립중·고·특수학교)	
	예산액	1,083,887,000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	물 량	126개교 (사립중·특수학교)	수업료를 징수하는 고등학교는 제외
	예산액	69,083,305	
계		1,152,970,305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20년도			2019년도
	기정예산 (A)	추경 증감(B)	추경 예산 (A+B)	최종예산
계	1,233,916,696	29,156,781	1,263,073,477	1,053,959,761
인건비재정결함보조	1,083,887,000	-	1,083,887,000	
고교무상교육 (사립고)	150,029,696	27,038,301	177,067,997	
원격수업운영교사지원 (사립고)	-	2,118,480	2,118,480	

- 금번 ‘인건비재정결함보조’ 예산은 1조 2,630억 7천 3백만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291억 5천 7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바, 이는 사립고 1학년의 ‘고교무상교육’ 예산이 270억 3천 8백만원(18.0%) 증액되고, 사립고의 원격수업운영교사지원 예산 21억 1천 8백만원이 새롭게 신규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인건비재정결함보조는 당초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고1 학년 대상 무상교육을 금년 2학기부터 조기시행 함에 따라 사립고의 수업료에 대한 재정결함을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 현재 고등학교의 경우 수업료를 징수하여 이를 학교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으나, 금번 추경을 통해 고교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될 경우 고등학교도 수업료를 징수 할 수 없어 학교운영비의 충당이 어려워지므로 고등학교의 운영비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그러나 교육청은 금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고1 학생의 수업료를 대체하는 금액에 대해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를 운영비가 아닌 인건비로 편성함으로써 예산서상 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가 미편성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 따라서 동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인건비재정결함보조는 학교운영비 결손을 고려하여 운영비재정결함보조와의 사업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미 본예산 편성시 고1 학생 수업료 징수분을 감안하여 인건비재정결함보조를 편성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2학기분 수업료 부분만을 별도의 운영비재정결함보조로 계상하는 것은 오히려 예산집행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할 것인바, 고교무상교육비의 세부사업별 편성 항목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 건축공간정책(사업별 설명자료 609p)

① 개요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축공간정책’ 사업 중 교육시설 관리체계운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개정(2018.12.18.일부개정, 2019.12.19.

시행)에²⁶⁾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및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수단 등을 반영하고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20년도			2019년도
	기정예산 (A)	추경 증감(B)	추경 예산 (A+B)	최종예산
계	136,366	30,443	166,809	170,600
교육시설관리체계운영	-	30,443	30,443	-
디자인정책사업 추진 및 지원	15,400	-	15,400	28,800
다양한디자인정책	-	-	-	50,000

26) 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① 공공기관은 건축물등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3. 디자인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그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중 기본구상, 공사수행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과정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④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건축 사업이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가 완료된 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2.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3. 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 ①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우: 「건축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 다만, 지역건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두는 건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기획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건축물등의 설계 및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한다.

모델개발연수				
미래교육공간 자문단 운영	37,650	-	37,650	40,000
설계공모운영	83,316	-	83,316	51,800

○ 이에 따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축공간정책’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천만원 증액된 1억 6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동 증액 사업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전문가 수당으로 1천 7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수당 등으로 1천 3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동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업 추진시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법정 의무기구이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임의기구라 하겠습니까.²⁷⁾

한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조2의제6항은²⁸⁾ 교육청이 동

27) 제24조의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제24조제2항 각 호의 업무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 제21조의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예산을 마련할 것
2.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5명 이상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갖출 것.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 5명 이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전문인력의 수를 3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법 제24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사전검토 업무의 운영규정을 마련할 것

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교육청은 동 센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상위법령의 조례위임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 없이 동 센터를 구성·운영하여 왔으며²⁹⁾, 동 센터의 민간전문가 위촉·운영과 관련해서도 교육청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전문가를 미리 위촉하여 7건의 사업에 대해 사전검토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경우도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청이 미리 정하도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³⁰⁾ 교육청은 별도의 규정 없이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이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법 제24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그 내용 및 결과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운영실태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선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9) 서울특별시교육청 보도자료, '서울시교육청, 시·도교육청 최초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2020.4.1. 참고

30) 제19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공공건축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②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및 조경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 경우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해야 한다.

③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④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3. 심의 안건 및 내용
4. 의결 결과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이 정한다.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최근에서야 규칙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³¹⁾

- 더욱이 교육청은 관련 법령의 시행이 2019년 12월 19일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센터 등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이를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의 이와 같은 절차를 무시한 행정은 ‘법치행정의 원리’와 ‘예산 계획성의 원칙’ 및 ‘사전의결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치로서 의회의 예산심의권까지 훼손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2020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유와 위임법령 위반 등에 대해서 교육청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V.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VI. 토론요지 : (생략)

VII.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VIII. 심사결과 : 수정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별첨])

31) 현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은 입법예고 중에 있음.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0-151호(2020.6.8.)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제정안 재입법예고 (기간 : 2020.6.8.~2020.6.29.)

IX. 부대의견 : 없음.

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2020년 추가경정예산 계약제교원인건비 편성(안)

구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계약제교원 인건비 (4,250명)	보수	222,010	218,877	3,133	1.4%	○ 정원의 총원 및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개정으로 증가예상 : 68명
	법정부담금 등	46,475	45,525	950	2.1%	○ 맞춤형복지 근속점수 부여 등
	소계	268,485	264,402	4,082	1.5%	

1. 보수 편성 인원

☛ 계약제교원 : **4,250명** [본예산 편성 인원(4,182명) + 정원 외 증가 인원(68명****)]

⇒ 기간제교사 인원 증가 추이(4.1기준 전년대비 증130명) 및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개정(14호봉 제한 제외, 육아휴직 가능, 병가일수 연장 등)내용을 고려하여 편성 인원 증원

**** 특정교과수업시수지원(중등) 49명, 정원부족 대체(특수·보건) 19명, 계 증68명

2. 봉급 단가 : 2020년 본예산 봉급 단가(3,949,489원)

∴ 2020년 본예산 봉급 단가 편성 기준

- 2019년 1월~9월 집행 단가 평균값 산출
- 집행 단가 평균값 × 자연증가분(0.9%)* × 보수인상률(2.8%)**

*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다음연도 보수예산 추정 시 반영하는 자연증가분

** 「공무원 보수 규정」개정('20. 1. 7.), 적용('20. 1. 1.)

3. 계약제교원 인원 증가 및 처우개선에 따른 증액 : 37억원

☛ 보수 : 3,949천원 × 68명 × 12월 = 3,222,784천원

- * 계약제교원은 본봉·수당 구분 없이 보수로 일괄 편성
- * 최근5년간 집행계수 적용 부족액 : 약26억원
- * 정액급식비 인상 : 약5억원(월1만원 × 4,200명 × 12월)

☛ 맞춤형복지 : 70천원 × 7,000명(공사립) = 490,000천원

-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19. 11. 1.)에 따라 근속점수, 가족점수 배정
- * 근속점수 : 1년당 10천원, 평균경력 7년
- * 가족복지점수 : 개별 산출이 불가능하여 기 편성 예산 내 집행 예정

4. 보수총액 감소에 따른 법정부담금 감액 및 요율 인상분 : 4억원

- ❖ 보수총액 증감 : 305,682천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건강보험료의 8.51%→10.25%) : 124,095천원
- ❖ 산업재해보험료(0.85%→0.9%) : 30,153천원

[별첨]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위원회 심사의결내역
 (2020. 6. 19.)

□ 총규모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안	교육위 심사의결내역	증감액
세입	10,792,466,841	10,792,466,841	0
세출	10,792,466,841	10,792,466,841	0

□ 세출감액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안	심사의결액	증감액	비고
계약제교원인건비	268,484,683	266,851,711	△1,632,972	○계약제교원인건비감액
교원인사관리	2,731,587	2,710,587	△21,000	○교원치유프로그램운영비감액
교육정책홍보	4,278,145	4,028,145	△250,000	○광고홍보비감액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444,710	437,710	△7,000	○외국협력기관교류통번역료감액
사학기관관리	211,650	191,650	△20,000	○사학기관우수경영학교포상금감액
시설사업관리	21,020,327	20,989,884	△30,443	○건축공간정책운영비감액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94,606,011	593,006,011	△1,600,000	○꿈을 담은 교실 사업비 감액
학생생활지도지원	28,038,474	27,038,474	△1,000,000	○기금운용계획안보류에따른감액
합계	919,815,587	915,254,172	△4,561,415	

□ 세출증액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안	심사의결액	증감액	비고
내부유보금	-	1,030,443	1,030,443	○내부유보금편성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건축공간정책운영비)
예비비	14,241,091	17,772,063	3,530,972	○예비비 편성
합계	14,241,091	18,802,506	4,561,415	